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3. 5. 27(월) 14: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경재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홍성규 상임위원  
김대회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4시 30분 개회 】

### 1. 성원보고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방청은 총 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 2. 국민의례

○ 박노익 기획총괄담당관

-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이경재 위원장

- 2013년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이경재 위원장

- 지난 제1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 <보고안건> 1건이 모두 공개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 교통경북 FM방송국 (2013-20-049)

####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을 말씀드리면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심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2년도에 접수된 도로교통공단의 교통경북방송국(FM)에 대한 허가심사 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허가신청 현황은 <표>로 정리되어 있는 대로 신청인은 도로교통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대상은 교통경북 FM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의 방송구역은 포항시 일원과 경주시와 영덕군을 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허가심사위원회 구성(안)을 말씀드리면 방통위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중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결정을 하시되,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대로 분야별 심사위원 구성(안)이 제시되어 있고, 심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및 배점입니다. 심사기준과 배점은 방송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방송보조국으로 되어 있는 도음산FM 방송보조국을 폐지하고 방송국을 새롭게 개설하는 점을 감안해서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데 그 첫째가 신규 방송국화함에 따른 기획·편성,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방송국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방송국의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 7개 항목별 배점은 총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특히 중점 심사항목의 배점을 각각 250점으로 해서 1,000점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점기준과 같은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하기 전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허가여부 결정 기준은 심사결과 65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인에 대해서는 ‘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안)은 오늘 보고 드린 기본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기술심사를 미래부에 의결하고, 5월 말과 6월 중순까지 시청자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 6월 셋째 주 정도에 심사

위원회 심사를 해서 넷째 주에는 심사위원회 의결과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신규 라디오방송국 허가심사 기본계획(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계획에 보면 기존에 있는 방송보조국을 폐지하고 새롭게 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파수 관계가 문제가 없는지 이것은 아마 미래부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대희 상임위원

- 미래부와 협의해야 할 텐데 기존 보조국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을 폐지하고 이것으로 하게 되면 주파수 간의 혼·간섭들이 짝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래부와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기술심사는 미래부에 의뢰해서 의견을 충분히 받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3-20-050)**

○ 이경재 위원장

- <의결사항 나>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3년 12월에 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등 38개 사업자 26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국은 보고드린 대로 '13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총 38개사, 262개 방송국입니다. 구체적인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와 방송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표>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재허가 심사의 중점적인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책임을 제고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특히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송국 운영실적이나 향후 사업계획을 심사할 경우에 방송의 공익성 및 공적책임 실현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청자 권익이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방송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자 했고, 그 심사기준과 절차를 보다 합리화하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지상파방송사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수를 기존보다 증원코자 합니다. 아울러 기존의 방송국 단위의 평가단위에서 방송사업자 단위로 심사평가단위도 개선함으로써 심사절차의 합리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심사를 강화해서 재허가 제도 실효성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재)허가 조건이나 권고사항 등에 대한 방송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도 확대해서 자료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능력과 의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대표자나 최대주주 대상으로 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도 보다 강화해서 실시하고 심사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방안입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방통위원회 위원 또는 심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 9인의 심사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중점 방향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 전문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위원수를 증원코자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조건에 적합해야 하고 심사대상 사업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인사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심사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이 방통위 상임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심사위원 13인에 대한 구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분야 심사위원 한 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천을 할 수 있도록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심사기준 원칙입니다. 공익성과 시청자 보호 중점 심사와 관련해서는 방송의 공적책임 심사항목을 최대 배점 항목으로 유지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1,000점 만점에 150점의 최대 배점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사에도 유지코자 합니다. 시청자 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항목 배점을 75점에서 10점 상향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금번 심사에서는 채널 특성을 고려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일률적인 심사기준 적용으로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영·민영, 종합·전문편성사업자에 대한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서 평가코자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중복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방송평가가 40%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평가는 주로 운영실적 위주의 평가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유효기간도 연장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향후에는 실적 부분은 방송평가 등을 통해 충분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 재허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행실적과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을 명확히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심사코자 합니다. 보고

드린 대로 미래 대응전략이나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해 나가겠습니다. 융합 등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방송사가 서비스 다양화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또한 어떤 투자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환경 변화와 더불어서 이해관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방송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송발전 지원계획이나 기술적 능력 등의 심사항목으로 평가코자 합니다. 심사항목과 배점에 대해서는 방송법에 의한 법정 심사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재허가 심사 기본방향 등을 고려해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재허가 심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심사항목 구조는 유지하되, 심사 기본원칙에서 보고 드린 중점사항을 반영해서 배점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라 총점은 1,000점 만점으로 하되, 세부심사기준과 평가지침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13년도 심사항목 및 배점 구성(안)을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중에 특징적인 몇 부분만 보고 드리면 세 번째 프로그램 편성·제작이 지금까지 2010년도 배점이 50점이었습니다만 편성과 제작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25점을 상향코자 합니다. 또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부분도 15점 상향 조정하고, 시청자 권익보호 부분도 10점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에 기타사항의 디지털 전환부분은 지상파의 아날로그 종료이 이루어졌고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의 평가는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감점기준 등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재허가 여부 결정입니다. 심사결과 650점 이상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의결코자 하겠습니다. 650점 이상을 획득한다 할지라도 특정 심사항목에 대해서 그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하거나 재허가 신청서나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담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기본계획(안)을 의결해 주시면 5월 말에 재허가 신청을 권고토록 하고, 6월 말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9월~10월에 걸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다음에 11월 중에 재허가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 '1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기본계획(안)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이번에 하고 나면 3년 뒤 또는 5년 뒤에 해야 하니까 이번 심사과정에 있어서 조건부 권고사항이 아주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을 주든 현재 법정 최대한도인 5년을 주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조건부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로 체크할 영역, 그다음에 1년 단위로 체크할 영역을 명확하게 중간 검토기간을 정확하게 주고 조건부 권고사항들을 5년이고 3년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영역보다도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되지도 않는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산장비를 사용하면 A/S가 어떻다는 등, 고장이 자주 난다는 등, 그런데 각종 국산장비 전시회, 최근에 있었던 KOBA(국제방송음향조명기기전시회)에 가보면 한 번도 국산

장비를 넣은 회사에서 어필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국산장비에 대한 사용자들의 외산장비 선호를 영똥하게 국산장비의 퀄리티 문제로 변환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심사원칙이나 기본방향, 이 중에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국산장비 설치율, 그다음에 구입률을 명확하게 평가하고 두 번째 사업계획에 국산장비 확대비율을 명확하게 해서 2가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받아서 국산장비와 관련된 지원책들을 아주 제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산장비 활용과 관련해서 재허가를 제외하고 국산장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쓸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국산장비를 이번에 가장 큰 화두로 잡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원칙이나 심사의 기본방향에 다시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 국산장비 활용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년 하는 이야기지만 보완 입법하시라, 예전의 IPTV나 그다음에 서대구케이블방송, 우리가 재허가 거부를 했었을 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내부에서도 고발자가 나오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실행력도 없고, 그러면서 재허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 그다음에 재허가를 통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 자체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완 입법해서 재허가를 거부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한 10년 연구했지 않습니까? 10년 연구했으면 이제는 좀 하시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중간 검토기간 명확화, 중요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명확히 해서 반기 또는 1년 단위 점검사항 조건이나 권고 부분 충분히 확인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장비 사용실적 이 부분도 중요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에 명확히 명시는 하지 않았습디만 기술적 능력이나 방송발전 지원 계획의 평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단에 그 뜻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부분은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재허가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재허가가 거부됐을 때의 후속조치에 대한 입법, 저희들도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구체적인 입법화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 번 준비된 안을 조만간 보고 드리고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제발 조만간이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내는 조만간이 안 되기를, 책임지고 하세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만들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무엇을 들고 와야 도와주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준비되어 있으니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스케줄이 급합니까, 아니면 여유가 있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급하지도 않고 여유가 있지도 않은 정규적인 절차에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11번까지 쪽 점수 매겨진 <표>가 있지 않습니까? 10번에 보면 지난번에 할 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정책과제 비슷하게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책과제가 없이 그 점수를 다른데 배점한 것이지요?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재허가 하려면 3년, 5년 걸리는데 과연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으로 3년, 5년 동안에 지상파에게 이것 하나 정도는 하게 하자, 이런 정책과제가 없을까요?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서요.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런 고민해 봤습니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저희가 이번에 중점 심사방향에 넣은 것 중 지상파의 대응전략에 사실은 중소방송이나 타매체와의 상생방안을 중점 심사방향으로 넣었고, 디지털 전환처럼 이렇게 특별한 정책적인 목표를 두고 50점 배점을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유료방송이 아니고 지상파 방송이니까 혹시 우리가 앞으로 한 3년, 5년 중에 이것을 꼭 관철시켜야 하겠다는 것이 없을까요? 그런 것이 있으면 시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타이밍이 여유가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어떨까...

○ 장봉진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실제 저희가 이번 재허가 기본계획을 올려드린 것은 사업자가 6월 말까지는 재허가 신청을 내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허가기간 만료 6개월 전에는 재허가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양보할 테니까 여기 보면 공익성, 공공성, 방송평가, 프로그램 편

성·제작 이런 것 해서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장기 발전정책이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어서 적어도 지상파라면 이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점수는 이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심사를 할 때 그런 점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는데 예를 들면 UHD 문제라든지 지금 늘 지상파와 관련해서 제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언어순화이지 않습니까? ‘방송이 말을 다 버린다’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그것이라도 하나 넣어서, 적어도 이번 재허가 기간 동안에는 그것에 대해서 지상파방송들이 확실하게 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관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점수 배점이나 아니면 세부 항목에 그것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것 하나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기본방향에도 <1>번에 시청자 권익 증진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시청자 중심의 시대로 가고 있고, 앞으로 3년, 5년이면 굉장히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10점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5점을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영 적정성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시청자 권익보호 쪽을 상당히 많이 올려보면 어떨까,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정례적인 심사항목입니다. 전에는 디지털 전환이라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 확실한 계획을 내라, 이런 뜻에서 예를 들어 15점 위에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있는 것을 이번에 25점을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경영 적정성에서 좀 더 자세히 봐 주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것들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능동적인 시청자 복지 세부사항이 필요합니다. 점수 배점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배점을 상향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세부 배점 부분을 별도의 특별 과제를 신설보다 세부 배점으로 하자는 말씀, 좋은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심사위원회 구성에서 논의할 때 충분히 중점이 되는 부분이 세부 배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잘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나 기본원칙을 할 때 저희들이 기존과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점적인 방향성에서 많은 것들을 메시지로 주고자 했는데 그중의 대표적인 것이 매체별로 구분해서 평가요소를 달리 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공적인 부분은 공·민영 또는 전문·종합편성 이런 매체별로 구분해서 전문화된 배점이 이 상단에서는 안 나타났지만 이 하단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시청자 권익 부분은 포괄적으로 공적인 요소 부분에 해당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단에, 특히 방송사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구태여 상단의 배점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이번에는 기본방향 자체가 매체에 따라 평가요소를 차별적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능력 부분이 바로 배점을 어떻게 보면 앞에 재정을 많이 볼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강조해서 봐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방금 지적하신 UHD나 차세대에 대한 방송의 준비를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평가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 추진방향에 환경 변화에 대한 미래의 대응 부분을 이런 기술적 평가를 통해 이제는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뜻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을 그렇게 녹여서 반영하겠다는 건 제가 양보하고, 다만 우리가 지상파 방송을 구분해서 공영방송, 민영방송 그 방송의 성격에 따라 세부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게 할 수 있는 철학이나 정책방향을 녹여서 차별화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김대희 상임위원**

- 이번에 달라진 평가방향으로 향후 계획의지를 평가하겠다는 것 다음에 미래 대응전략과 상생에 대해서 평가하겠다고 담은 부분은 전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장비의 국산화 이야기도 나왔었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담겨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송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방송사 자체적으로 해서 가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 정부가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의미는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장비 국산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새로운 시도인 만큼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교한 심사기준을 반영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여기에 없던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심사위원 추천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에 추천을 의뢰하는 아이디어를 담아주셨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평가합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방송평가 400점과 나머지에 나오는 평가항목들과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방송평가 중에서는 그 아래 내용들이 대개 방송평가로 들어가는 부분 같은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항목으로만 보면 위원장님 지적대로 중복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직시했는데, 다만 방송평가 400점은 그 항목 가운데 지난해의 실적, 지금까지 계획을 보는 것이 아니고 실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에는 실적이 담기는 것이고, 동일한 항목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프로그램 편성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심사계획상의 편성은 향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이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점 부분이 실적을 평가했기 때문에 나머지 600점은 향후 계획을 주로 많이 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금년에는 그동안 5년마다 재평가, 재허가를 받는 지상파 방송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전면적으로 다시 재허가한다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방송환경이 5년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의례적으로 과거에 하던 항목이나 기준으로만 봐서는 정례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새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평가해서 정말 낙오될 때와 또 발전될 때와 이런 것이 분명히 구분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방송계도 자극이 되고 또 새로운 경쟁의 의지를 갖게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평가항목들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만들었겠지만 하여튼 심사할 때 아주 분명하게 방송계에 방통위의 의지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

○ 이경재 위원장

- <보고사항 가>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방송사업자 허가 등의 사전동의 업무절차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보고배경을 말씀드리면 방송법 개정으로 미래부가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SO), 중계유선방송(RO) 사업자 허가를 하는 경우에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업무절차가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련된 업무절차에 적용할 수 있는 사전동의의 절차를 보고 드리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5년간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의 재허가는 총 178개 사업에 대해서 재허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자별 재허가 일정은 <표>에 제시된 바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 절차(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처리 절차를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래부가 보고 드린 동 방송사업에 대해서 허가여부와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는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래부가 허가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고 사업자에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사전동의 심사

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래부가 먼저 1단계로 심사를 한 후에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의 전문가 심사단을 구성해서 그 심사 후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사업자 업계의 부담 증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심사 일정 지연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가 허가 검토를 시작하면 방통위도 외부자문단이 참가하는 사전동의에 관한 예비검토를 동시에 진행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면서 허가절차의 신속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예비 검토 후에 특별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쟁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방통위의 전문가 심사도 예외적으로 생략도 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사전동의 방법은 사전동의 요청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로 의결하게 됩니다. 만약에 부동의 의결을 해서 다소의 기간이 연장되면 허가처리 기간 연장을 통해 재심사를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변경허가 등의 사전동의 처리절차(안)가 되겠습니다. 변경허가 사항은 박스 안에 나온 대로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 사업의 법인 전환 등 모두 6가지가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변경허가의 사전동의도 보고 드린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만 경미하거나 빈번한 사안인 중계유선방송(RO) 관련사항이나 종합유선방송(SO)의 일상적인 시설변경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중요사안은 역시 재허가와 마찬가지로 대면회의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재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전동의 처리절차를 보고드렸고, 다음으로는 현재 SO에 대해서 사전동의 요청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주)현대HCN포항방송에 대해서 사전동의가 들어와 있는데 동 사항에 대한 심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자 현황은 (주)현대HCN포항방송이 되겠습니다. 방송구역은 경북 포항·울릉·영덕·울진을 포함하게 되며, 허가기간은 '13년 6월 13일이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겠습니다. 현재 최대액출자는 (주)포항종합케이블방송사로서 (주)현대HCN이 97.46%로 최대주주가 되겠습니다.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주)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은 '10년 6월 7일 재허가 의결을 허가유효기간 3년으로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년 말에 방통에 재허가 신청을 했고, 이후 미래부에서 5월 21일 사전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주 내 전문가 심사단 심사를 통해 6월 허가 유효기간 이전까지 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사전동의 처리절차에 대한 그래픽, 도표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경재 위원장

- 보고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충식 부위원장

- 사전동의 문제는 국회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업무 분장을 나눌 때 굉장히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 또 마지막까지 상당히 극적인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보는데, 첫째는 우리가 과거에 미래부 일을 겸해서 가지고 있던 때와는 달리 이 문제를 따로 사전동의라고 하는 형태로 미래부의 업무를 체크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입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의 의무 방기이거나 수박 겉핥기 같은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사전동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사전동의'를 갖고 질질 끌고 또 병목(bottle neck)으로 작용하는, 여기 보고서에도 나온 것처럼 업

무부담을 증가시키고 심사 일정이나 지연하는 이런 손톱 밑의 가시라고 할까, 전봇대 같은 장애요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권한 남용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양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권한 남용도 아니고 의무방기도 아닌 그 중간의 접점을 찾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행정을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현대HCN포항방송 경우를 비롯해서 향후 178개가 재허가가 다가온다고 하는데 방송정책국에서 담당 과장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사전동의' 문제를, 조화를 찾아서 신 방통위의 위상을 정립하고 또 정직한 행정의 자세를 보여줄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검토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예전에 하던 것 이상으로 치밀하게 검토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쟁점과 관련해서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사가 생략 가능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예비검토가 사실상 우리는 1차적으로 바로 내부 검토가 아니라 예비검토라는 개념의 전문가 검토가 바로 들어가서 쟁점이 추출되고 그 쟁점에 있어서 입장들의 차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동의·부동의의 개념을 확장해서 의도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데, 만약 독립되어 우리가 조건부동의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방통위에 있는 공무원과 미래부에 있는 공무원이 전혀 다른 프레임을 짤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할 때 부동의가 일어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별로 없다, 그런데 정교하게 들어가서 결국 쟁점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때 동의의 내용이 조건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동의·부동의 두 경우의 수밖에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건부동의를 있을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 ○ 김용일 방송지원정책과장

- 사전동의 방법 중에 동의를 하면 조건부동의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면 속도 문제에서 조건부동의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치밀함과 철저함에 있어서는 예비심사가 아니라 예비검토 때 바로 우리는 전문가 심사가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동시에 팀을 짤 때 내부 직원들과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바로 팀을 짜서 바로 들어가는 이런 수준에서의 철저함을 기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이 당구장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 홍성규 상임위원

- 같은 질문인데 방통위도 외부자문단이 참가하는 사전동의 예비검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전문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그런데 특별히 쟁점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가 심사를 생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 검토는 누가 하고 방통위 전문가 심사 생략은 누가 하는지, 그냥 사무국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말씀드리면 양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당구장표 위에 예비검토를 같이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비검토 단계에 사무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이미 외부 예비심사단 비슷하겠지요. 외부전문가가 같이 참여합니다. 같이 예비검토를 하게 되고, 만약에 쟁점이 없다는 여부의 판단은 우리 사무국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참여한 외부 전문가 의견을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려서 동의하실 때 쟁점이 없이 그냥 심사 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프로세스에 예비검토 단계에 속도를 위해서 실무자 플러스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예비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정식 심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심사단을 정식으로 구성해서 심사위원장을 방통위 위원님이 주로 참석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속도는 괜찮습니까? 우리가 오래 붙들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기 위해 예비검토를 미래부와 같이 진행하는 것입니다. 통상 90일 기간이 주어지는데 90일 기간을 다 지킬 필요는 없겠지요. 더 빨리 하면 좋은데 미래부가 들어갈 때 저희들도 동시에 예비검토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동의 때문에 적어도 이 절차가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한 가지, 사전동의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예산과 인력이 정상적으로 배정됐습니까? 전형적인 정책 역할을 그대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예산과 인력이 어떻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인력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함을 느낍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담당하는 과가 과거에는 2개 과 아니겠습니까? 채널정책과와 뉴미디어과, 그런데 지금 2개 과가 없어지고 1개 과가 담당을 하고, 여기에 방송주파수 문제도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원이 과거보다 사전동의도 SO에 대해 기본업무가 그대로 진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기본업무가 그대로 진행되는데 원래 세 과가 하던 일을 한 과에서 하고, 한 과로 하면서도 또 과 인원도 축소되고 그리고 기본적인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이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업무량에 대해 부족한 여러 가지 인력, 조직적인 부분은 추가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함께 좀 더 보완할 것은 보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어떻게 준비합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일단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할 것이고, 어느 정도 부족하고 어떤 조직이 필요한 것이 나올 것이고 그것을 통해 정부의 행안부 조직 담당 부서한테 협조를 구해야겠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인력과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사무국 차원의 입장이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입장과 전체 회의의 기본적인 내용으로 힘을 실어서 전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판단하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저희들이 일은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보고를 드려서 방통위 차원에서 함께 해야 할 일이지요.

○ 양문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 이것이 아차 하면 열산하게 생겼습니다.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세 과가 하는 것을 한 과, 그것도 부족한 한 과로 커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인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냉정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 이경재 위원장

-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을 냈을 때 사업자가 아까 국장 보고에 의하면 미래 부에 신청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동시에 방통위에 알려줘서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해서, 방통

위에 공식으로 넘어왔을 때 미래부에서 예비로 점검해서 우리 쪽에 넘긴다는데, 그 말처럼 세 번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신청서를 방통위에도 넣고 미래부에도 동시에 넣고 우리가 사전절차를 진행해 나가야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홍성규 위원이 지적했듯이 해명을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전문가 없이 서류상 의결로도 가능하다는 판단 자체를 실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아까 설명했는데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오면 즉각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열릴 때 “실무적으로 이렇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셨는데….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처음 접수할 때 미래부에 사업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우리한테도 동시에 제출해 주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저희들이 사업자와 미래부와 협조해서, 접수라는 것이 공식적인 접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허가에 대한 심사가 미래부가 되는 것이고, 사전동의 요청은 미래부가 저희한테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사업자에게 서류를 접수할 때 저희들한테도 가접수 형태로 하게 하면 아마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경재 위원장**

-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최근의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절차적으로 속전속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부서를 나누어 놓고 또 이렇게 사전동의 절차를 집어넣었는데, 미래부에서 접촉하고 방통위로 오고 방통위에서 또 해서 보내고 하는 그 과정이 두 단계로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차적으로 곤란하면 시행령을 바꾼다든가 합의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상설 위원회 구성해 놓고 들어오면 바로 검토하는 것, 저희들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면 즉시즉시 체크하고 그것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양문석 상임위원**

-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설위원회라는 개념이 우리가 SO 재허가든 무엇을 하려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중에 한 사람이 심사위원장을 하지 않습니까? SO를 전담하는 내부 심사위원회를 꾸려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심사위원회를 꾸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검토를 위한 전문위원회처럼 꾸려 놓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심사단의 명단을 먼저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재허가라는 것이 특히 이런 시비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심사위원회

라는 명칭보다는 전문가 위원회식으로 구성해 놓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성규 상임위원**

- 맞습니다.

○ **김준상 방송정책국장**

-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제 위원장**

- 이것은 재허가가 아니고 사전동의 절차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개가 들어온다니까 상설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놓고 들어오는 즉시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빠른 처리가 되지 않느냐...

○ **양문석 상임위원**

- 오늘 논의는 어쨌든 제목이 재허가나 허가 사전동의 처리절차만 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정책은 또 다른 단위와 차원에서 또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지금 전문가 위원회 구성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오늘 어쨌든 제목이 재허가 사전동의 절차니까...

○ **이경제 위원장**

- 전문가 위원회라는 것과 심사위원회 구성하는 것과는 말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의미로도 해석되니까 분명히 개념을 말씀하시고 결정하십시오.

○ **김대희 상임위원**

- 그것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면 사업자 허가라는 것이 투명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사위원을 비밀로 붙이면서 무작위로 선정하면서 해 왔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사전에 정해 놓는다는 것이 위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재허가가 큰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문가라고 표현을 바꾸었는데 뭔가 절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서 하는, 그렇게 맡겨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고민해서 이것이 원래 하나였던 절차를 2개 부처가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90일이라는 전체 주어진 기간 내에서 하려고 노력해서 해 놓았고, 그다음에 사전 예비검토를 통해 절차를 단축하는 것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을 해 가면서 보면 아마 더 보완해야 할 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노력을 많이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양 부처가 서로 소통을 잘해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위원회도 위원회로서 또 이런 원래의 취지를 살려서 서로 간에 적극적이고 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간다면 운영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경제 위원장**

- 다른 말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 8. 기 타

### ○ 이경재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 9. 폐 회

### ○ 이경재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차 방송통신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시 40분 폐회 】